



청주상공회의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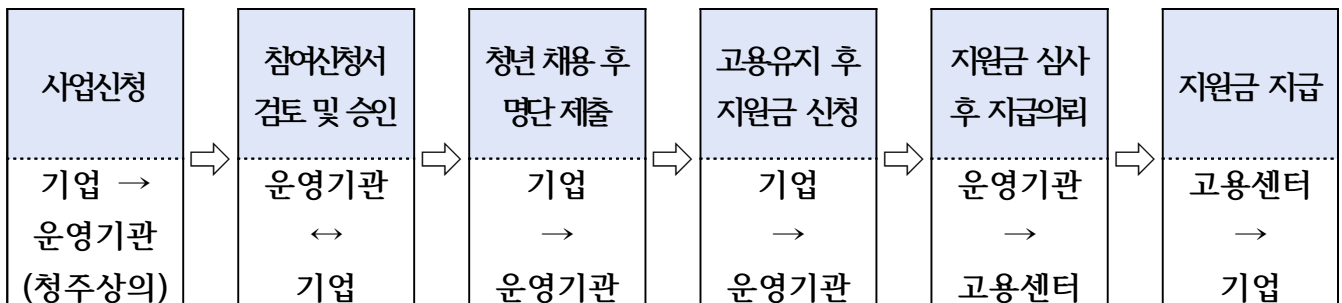
청주상공회의소는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충북소재 시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「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」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□ 지원 유형 및 내용

구분	유형 I	유형 II
대상 기업	• (모든 업종)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	• (제조업)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
대상 청년	-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※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따라 연령 제한이 연동(최고 만 39세까지) - 취업애로청년 기준 중 한 가지 이상 충족 4개월 이상 실업, 고졸 이하 학력, 고용촉진장려금 대상,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등	-
지원 요건	(매 출 액) 기준 피보험자 수 * 1,900만원 이상(업력 1년 미만 심사 생략) (고용조정 제한) 대상 청년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 동안 사업장 인위적 감원 없어야 지원 가능 (고용형태) 기업신청일 기준 3개월 전 ~ '25.12.31. 정규직 채용 (근로조건) 주 소정근로시간 28h 이상	
지원 내용	• (기업) 6개월 고용유지 후 1명당 월 60만원, 1년 최대 720만원 지원	• (청년) 6, 12, 18, 24개월 근속 시 각 120만원, 최대 480만원

* 유형 I 참여 기업 중 5인 미만 가능 경우: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, 재생에너지산업, 미래유망업, 지역주력산업 (디자인산업, 핀테크산업, 게임산업육성 및 영상물 활성화 등), 청년창업기업(사업주가 청년, 사업개사~7년이내)

□ 신청방법: 고용24 누리집 <https://www.work24.go.kr>



* 사업 신청 전, 기재용 청년이 있는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 해야 함

□ 문 의 처

▶ 담당자 : 문경혜 연구원 043-263-2669 / ansrudgp@korcham.net

□ 붙임1. 우선지원대상기업

①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?

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 기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미만, 혹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등

② **확인방법:** 고용, 산재보험 토탈서비스(<https://total.comwel.or.kr/>) 로그인 → [정보조회] 메뉴 → [사업장 총괄카드 조회] 메뉴에서 대규모기업 해당여부 '비해당'확인

③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근로자 수 기준 :

산업분류	분류기호	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
1. 제조업 [다만,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(34)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]	C	500명 이하
2. 광업	B	300명 이하
3. 건설업	F	
4. 운수 및 창고업	H	
5. 정보통신업	J	
6. 사업시설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[다만, 부동산 이외 임대업(76)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]	N	
7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8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9. 도매 및 소매업	G	200명 이하
10. 숙박 및 음식점업	I	
11. 금융 및 보험업	K	
12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R	
12. 그 밖의 업종	-	100명 이하

□ 붙임2. 청년 자격요건

청년 자격요건(필수)
① 채용일 현재 만 15~34세 이하인 자(군필자인 경우 의무복무기간 비례하여 산정) ②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*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1년 이내에 (재)고용한 자 제외 ③ 채용일 직전 3개월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재직하고 있지 않은 청년 * 최초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자는 참여 가능 ④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청년 ⑤ 채용일 기준 재학 중이 아닌 자 * 방통대, 대학원 등 재학, 고등학교 졸업예정 가능, 대학교 졸업예정(마지막 학기에 재학중임이 확인되는 서류 증빙 시) 가능

유형 I 취업애로청년 유형(1개 이상 해당)
①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②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③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④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, 미래내일일경험지원·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⑥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청년,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⑦ 대량고용변동신고사업장 이직 후 최초 취업자 ⑧ 북한이탈청년 ⑨ 자영업 폐업 이후,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⑩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